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가합543312 판결 [보증금 청구]

---

## 전 문

###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정혁진, 김종대, 조재현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이준호

변론 종결 2018. 5. 30.

판결 선고 2018. 7. 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1.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7. 21. C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09. 1.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581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8. 27. "C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대여금에 대한 이율이 월 2%라 주장하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67271호) 대여 당시 작성된 차용금 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에 이율이 기재되지 않았는바, C가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율을 월 2%라 단정할 수 없고, C는 이 법정에서 5억 원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 증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4.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대여한 금액이 4억 원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대여금액이 5억

원이라 기재되어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 증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려운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가 원고에게 2억 여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보호법은 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되어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8. 9. 22.에 시행되었고, 특히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증인보호법 제5조는 보증인보호법 부칙(2008. 3. 21.) 제2항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는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증인보호법 시행 이전인 2008. 7. 21. 체결되었고, 보증인보호법 시행일 이후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는 보증인보호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 C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알리지 않고 C의 이행불능 사실이 확실해졌음에도 피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을 구하지 않다가 9년 여가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설민수**

**판사이유영**

**판사전유상**